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85
----------	-------

발의연월일 : 2025. 6. 26.

발 의 자 : 전재수 · 강득구 · 위성곤
임오경 · 최민희 · 이학영
허성무 · 김기표 · 민형배
황명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사업으로,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특성이나 물량 등에 따라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화주에게 알선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한편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받게 되는 운임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해당 과정에서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만성적인 저운임으로 인해 운송사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송주선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 등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사업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여 화

물운송사업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운송주선 수수료)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계약의 중개·대리서비스에 대하여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요율의 한도 및 산정방법 등 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를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요율의 한도를 초과하여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6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요율의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주선사업자의 운송주선약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약관을 변경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운송주선약관을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② (생략)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u>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u> <u>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④ ~ ⑦ (생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제25조의2(운송주선 수수료) ①</u> <u>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계약의 중개·대리서비스에 대하여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u> <u>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요율의 한도 및 산정방법 등 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25조의 2제2항에 따른</u>----- -----<u>요율의 한도를 초과하여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u>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8조(벌칙) ----- ----- ----- -----.

1. ~ 3.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5.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 수료 요율의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	--